



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0-75호

## 입산통제구역 지정 · 고시

2010년 가을철 및 2011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존,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 월 4일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입산통제구역 대상지 : 붙임과 같음
2. 통제방법 : 입산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내 상시 통제
3. 통제 및 폐쇄 기간 : 2010. 11. 01 ~ 2011. 05. 15
4. 고시기간 : 2010. 10. 04 ~ 2010. 10. 30
5. 통제 및 폐쇄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6.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문의 :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4~5)
8. 유의사항 : 무단 입산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붙 임 : 입산통제구역 대상지 지정내역 1부.

**【붙임】**

**입산통제구역 대상지 현황**

(울산광역시 북구)  
ha)

(면적 :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면적	비 고
	구	동	번 지		
4개소			140필지	1,464ha	
염포산	북구	효문동,연암동	산30 외 15필지	171ha	
무룡산	북구	화봉동,창평동, 어물동,신현동, 무룡동,대안동	산48 외 73필지	832ha	
동대산	북구	매곡동,대안동	산155 외 35필지	405ha	
천마산	북구	천곡동	산133 외 13필지	56ha	

## 등산로 개방 및 폐쇄현황

○ 등산로 조정 : 동대산 등 3개산(48개노선 139.9km)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소 계				15개노선	47		
울산광역시	무룡산	북구	효문동			효문운동장 ~ 매봉재 ~ 무룡산정상	2.3	개방	
			효문동			상연암약수터 ~ 숲속쉼터	2.6	개방	
			송정동			화동못 ~ 돌배기재 ~ 숲속쉼터 ~ 무룡산정상	2.7	개방	
			송정동			도솔암 ~ 화산못 ~ 서당골	3.0	폐쇄	
			송정동			송정저수지 ~ 서당골 ~ 달령재	2.1	개방	
			농소1동			달령재 ~ 동대산큰재	3.7	개방	
			농소1동			도곡사 ~ 동대산큰재	3.2	폐쇄	
			농소1동			원지저수지 ~ 무제산 ~ 동대산큰재	3.3	개방	
			강동동			어물임도 ~ 물청소류지	1.2	폐쇄	
			강동동			어물임도 ~ 작은무룡산 ~ 양어장 ~ 황토전	4.0	폐쇄	
			강동동			무룡산정상 ~ 무룡사 ~ 장등마을	2.2	폐쇄	
			강동동			달령재 ~ 달곡마을	2.1	개방	
			강동동			무룡임도 ~ 큰골저수지	4.1	폐쇄	
			강동동			대안임도 ~ 큰골저수지	4.9	폐쇄	
			강동동			대안임도 ~ 사당골저수지 ~ 달곡마을	5.6	폐쇄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소 계				16개 노선	39.7		
울산광역시	동대산	북구	농소1동			흥골저수지 ~ 무제산 ~ 동대산정상	2.6	개방	
			농소1동			흥골저수지 ~ 동대산정상	1.5	개방	
			농소1동			동대산정상 ~ 호계재 ~ 마동재	1.6	개방	
			농소1동			연지암 ~ 호계재	1.3	폐쇄	
			농소1동			연지암 ~ 마동약수터 ~ 마동재 ~ 정수장	2.7	개방	
			농소1동			평해사 ~ 신흥재 ~ 마동 재	4.6	개방	
			농소1동			신흥사 ~ 신흥재 ~ 기령	2.8	개방	
			농소1동			청룡암 ~ 평해사방면 ~ 신흥재	1.6	폐쇄	
			농소1동			청룡암 ~ 약수임도입구방 면 ~ 신흥재	2.1	폐쇄	
			농소2동			울산외고 ~ 약수임도	2.9	개방	
			농소2동			디아채APT ~ 회양골운동 시설 ~ 기령	3.8	개방	
			농소2동			벽산APT ~ 회양골운동시 설	2.3	개방	
			농소2동			이화초등학교 ~ 회양골운 동시설	1.8	개방	
			농소2동			메아리학교 ~ 삼태봉 ~ 기령	4.3	개방	
			강동동			마동재 ~ 우음골 ~ 갈박 골	2.5	폐쇄	
			강동동			갈박골 ~ 다음골	1.3	폐쇄	
		소 계				7개 노선	23.7		
울산광역시	천마산	북구	농소3동			달천아이파크 ~ 정상산불 초소 ~ 달천임도	2.8	개방	
			농소3동			천만사 ~ 달천임도 ~ 천마산 정상 ~ 관문성 ~ 제전마을	8.6	개방	
			농소3동			달천농공단지 ~ 천곡임도 ~ 천곡낙시터	1.6	개방	
			농소3동			무상사 ~ 관문성	0.9	개방	
			농소3동			관문성 ~ 요양원	3.1	폐쇄	
			농소3동			관문성 ~ 선창골	1.7	폐쇄	
			농소3동			천만사 ~ 달천임도 ~ 진 득골	5.0	개방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643호

「울산광역시 복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울산광역시 복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 '09.8.7, 법률 제9432호, '09.2.6)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 되도록 정비하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10.3.25, 제543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2. 근거법규

가. 「식품위생법」 개정(시행 '2009.8.7, 법률 제9432호, '09.2.6)

나.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10.3.25, 제543호)

#### 3.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기금구성 재원 추가(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변경(안 제8조)
  - 기금출납명령관 : 총무국장 → 생활경제국장
  -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담당 → 위생관리담당
-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환경위생과, 전화 219-7364, 팩스 219-73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접수 재공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및 「2010년도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침」 중 일부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80,370원 이하인 세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승용차 재산 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만, 승용차 재산가액 산정시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 사용 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상이등급자)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의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10년 10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T.219-742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li> <li>2. 소득·재산 신고서 1부</li> <li>3. 정보 제공 동의서 1부</li> <li>4.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li> <li>5. 소득금액증명원 1부</li> <li>6.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li> <li>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 증명 서류 제출)</li> <li>8.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li> <li>9.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li> </ol>
----------	---

#### 6.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서류 제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 신규 체육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신규시설을 추가하고
- 헬스·수영 동시 사용자의 월 사용료 할인부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할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 탁구 사용료를 조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배드민턴 월 회원사용료·일일 사용료, 족구·배구장 사용료 신설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신규 체육시설 추가(안 제3조 별표 1, 안 제9조 별표 2)
  -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10조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 성 인 :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60,000원(70,000원)
  - 청소년·군인 :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55,000원(65,000원)
  - 어린이·노인 :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50,000원(60,000원)
- 탁구사용료 조정 및 배드민턴, 족구·배구 사용료 신설  
(안 제 10조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 탁구사용료(강습시)
    - 성 인 : 월 자유회원 사용료 40,000원(강습회원 55,000원)
    - 청소년·군인 : 월 자유회원 사용료 35,000원(강습회원 50,000원)
    - 어린이·노인 : 월 자유회원 사용료 30,000원(강습회원 45,000원)

- 배드민턴(강습시) 및 일일입장료 신설
  - 성인 : 월 강습회원 사용료 25,000원, 일일입장료 2,000원
  - 청소년·군인·어린이·노인 : 월 강습회원 사용료 20,000원, 일일입장료 1,500원
  
- 족구·배구장 사용료
  - 평일 : 2,000원, 토·일·공휴일 : 3,000원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시설재난관리과장)에게 전화(052-219-7652)·FAX(052-219-7659)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4.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